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콘텐츠·미디어·저작권·국제문화교류 정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문화미디어산업실로 상계신설하고, 국가 핵심 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이에 필요한 실·국 등의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증원 및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며, 디지털 홍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 및 정책금융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해외 문화홍보 거점 확대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밑에 학생처를 신설하여 교학처에 학생 관리 업무를 학생처 분장사항으로 조정하고 교학처 명칭을 교무처로 변경하며, 국립중앙박물관 밑에 기획관을 두어 박물관 종합 계획 수립 및 국회와 법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1년 5개월 연장하며,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문화예술정책실·국제문화홍보정책실·종무실·국민소통실·콘텐츠정책국·저작권국·미디어정책국·체육국 및 관광정책국”을 “운영지원과·문화예술정책실·문화미디어산업실·종무실·국민소통실·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문화예술정책실·국제문화홍보정책실·종무실·콘텐츠정책국·저작권국 및 미디어정책국”을 “운영지원과·문화예술정책실·문화미디어산업실·종무실”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의 “체육국 및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문화미디어산업실) ① 문화미디어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 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문화미디어산업업무 총괄·조정
2.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지원 및 이용자 보호
5.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6.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7.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콘텐츠의 육성·진흥
8.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업무 총괄
9.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
10.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12.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육성 지원
13.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14.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15. 콘텐츠 해외진출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정기간행물·광고·방송영상·영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오물
·게임·출판·인쇄·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만화 및 디지털문화콘
텐츠 등 콘텐츠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육성 및 지원
17. 제16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8. 콘텐츠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19. 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20.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정기간행물사업·지역언론·뉴스통신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연구
22. 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23. 콘텐츠미디어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24.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25.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26.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27.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28. 독서문화의 진흥
2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30. 정기간행물발행·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인쇄·출판·
대중문화예술기획 관련업의 등록·신고

31.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2.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3.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34.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허가 등 이용활성화
35.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6.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3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38. 부 내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조정
39.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0.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41.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2.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3.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44.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45.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46.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48.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49.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사·연구
50.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1. 한류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3명”을 각각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5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이하 이 항에서 “국가홍보”라 한다) 총괄
36. 국가홍보 관련 정부·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38.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개발
39.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트 운영 및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40. 온라인을 통한 국가홍보 전략 수립·시행
41.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취재 지원
4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지원
43. 국가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등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44. 정상 외교 및 국민방한 행사에 대한 언론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
45. 한국 관련 해외 언론 보도 및 국제 이슈에 관한 해외 자료 수집·분석
46. 해외 언론 보도 분석 자료의 활용 및 범부처 지원
47. 해외 언론 보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한다.

제17조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광정책국에 국장”을 “관광정책실에 실장”으로, “국장 밑”을 “실장 밑”으로, “1명을 둔다”를 “2명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실장”으로, “1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25조 중 “교학처”를 “교무처·학생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교학처)”를 “(교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학처장”을 각각 “교무처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보건·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제31조제1항 중 “행정운영단·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행정운영실·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보좌하는 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2조의 제목 “(행정운영단)”을 “(행정운영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운영단장”을 각각 “행정운영실장”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교육문화교류단)”을 “(교육문화교류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문화교류단장”을 각각 “교육문화교류실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후단 중 “59명을”을 “60명을”로 한다.

제14장(제7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제73조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제73조의2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을 “행정안전부”로, “각각 충원”을 “충원”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월 31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월 31일”을 “2028년 1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3조제1항 관련)

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정원
가. 관광정책실	1명
나. 문화예술정책실 1개 과	3명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한국예술종합학교 1개 처	0명

[별표 4의2]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73조의2제4항 및 제73조의3제4항 관련)

1.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8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7

2. 문화시설기획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별표 5]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74조 관련)

1. 제7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2. 제7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6월 30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또는 5급 이하	3

3. 제74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4. 제74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지원과 · 문화예술정책실 · <u>국제문화홍보정책실</u> · 종무실 · 국민소통실 · <u>콘텐츠정책국</u> · <u>저작권국</u> · <u>미디어정책국</u> · <u>체육국</u> 및 <u>관광정책국</u> 을 둔다. ③ (생략)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문화미디어산업실</u> ----- · <u>관광정책실</u> 및 <u>체육국</u> 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생략)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 · 문화예술정책실 · <u>국제문화홍보정책실</u> · 종무실 · <u>콘텐츠정책국</u> · <u>저작권국</u> 및 <u>미디어정책국</u> 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 · <u>체육국</u> 및 <u>관광정책국</u> 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문화미디어산업실</u> · 종무실----- -----. ③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 · <u>관광정책실</u> 및 <u>체육국</u> 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11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 ③ (생략) <u><신설></u>	<u><삭제></u> 제11조의3(문화미디어산업실) ① <u>문화미디어산업실에 실장 1명</u> <u>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u>

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 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문화미디어산업업무

총괄·조정

2.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

획의 수립·시행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지원 및 이용자 보호

5.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6.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7.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

콘텐츠의 육성·진흥

8.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업무 총괄

9.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

10.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

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

식재산 보호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12.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육성

지원

13.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14.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

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15. 콘텐츠 해외진출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정기간행물·광고·방송영

상·뉴미디어 영상콘텐츠·영

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

오물·게임·출판·인쇄·멀

티미디어문화콘텐츠·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콘텐츠미

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육성 및

지원

17. 제16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8. 콘텐츠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19. 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20.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 정기간행물사업·지역언론

· 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21.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연구

- 22. 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 23. 콘텐츠미디어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24.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 25.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 26.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 27.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 28. 독서문화의 진흥
- 2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 30. 정기간행물발행·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인쇄·출판·대중문화예술기획 관련업의 등록·신고
- 31.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32.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33.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 34.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허가 등 이용활성화
- 35.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36.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

- 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3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38. 부 내 국제문화교류업무 총
괄 · 조정
39.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0.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
획의 수립 · 시행
41.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제교
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2.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3.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44.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45.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46.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
문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
립 및 추진
4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48.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제13조(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
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9.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사·연구

50.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1. 한류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
조체계 구축

제13조(국민소통실) ① -----

----- 4명-----.

② ----- 4명-----

-----.

③ (현행과 같음)

1. ~ 34. (현행과 같음)

35.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이하 이 항에
서 “국가홍보”라 한다) 총괄

36. 국가홍보 관련 정부·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38.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
개발

<u><신 설></u>	<u>39.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트 운영 및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u>
<u><신 설></u>	<u>40. 온라인을 통한 국가홍보 전략 수립·시행</u>
<u><신 설></u>	<u>41.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취재 지원</u>
<u><신 설></u>	<u>4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지원</u>
<u><신 설></u>	<u>43. 국가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등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44. 정상 외교 및 국민방한 행사에 대한 언론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u>
<u><신 설></u>	<u>45. 한국 관련 해외 언론 보도 및 국제 이슈에 관한 해외 자료 수집·분석</u>
<u><신 설></u>	<u>46. 해외 언론 보도 분석 자료의 활용 및 범부처 지원</u>
<u><신 설></u>	<u>47. 해외 언론 보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u>
④ ~ ⑥ (생략) 제14조(콘텐츠정책국) ① ~ ③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5조(저작권국) ① ~ ③ (생략)	<u><삭 제></u>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① ~ ③ (생략)	<u><삭 제></u>
제18조(관광정책국) ① <u>관광정책</u> 국에 <u>국장</u> 1명을 두고, <u>국장</u> 밑 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u>국장</u>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0. (생략) ④ (생략)	제17조 (관광정책실) ① <u>관광정책</u> 실에 <u>실장</u> 1명을 두고, <u>실장</u> 밑 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u>실장</u>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한다. ③ <u>실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제17조(체육국) ① ~ ④ (생략)	제18조(체육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u>교</u> <u>학처</u> ·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 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 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 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 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 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	제25조(하부조직) ----- <u>교</u> <u>무처</u> · <u>학생처</u> ----- ----- ----- ----- ----- ----- ----- -----

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학생의 보건·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8.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신 설>

제31조(하부조직) ① 중앙박물관에 행정운영단·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

제26조(교무처) ① 교무처장은-----.

② 교무처장은-----.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26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보건·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제31조(하부조직) ① 중앙박물관에 행정운영실·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 2. (생략)

제32조(행정운영단) ① 행정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관등 1명을 둔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2조(행정운영실) ① 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운영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현행과 같음)

제34조(교육문화교류실) ①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문화교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신설>

사항을 분장한다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현행과 같음)

② -----

-----.

----- 60명-----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제73조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 ③ (생략)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74조(한시정원)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행
정안전부----- 충원
해야 한다.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한시정원) ① -----

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6년 2월 28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 ----- <u>2028년 2월 28일</u> ----- ----- -----.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6년 1월 31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② ----- ----- ----- ----- <u>2027년 6월 30일</u> ----- -----.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6년 1월 31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③ ----- ----- ----- ----- <u>2028년 1월 31일</u> ----- -----.
<u><신 설></u>	④ <u>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41</u>	<u>749</u>	+8
•	•	•	
•	•	•	
일반직 계	<u>734</u>	<u>742</u>	+8
•	•	•	
고위 공무원단	<u>24</u>	<u>2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50</u>	<u>657</u>	+7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759</u>	<u>1,760</u>	+1
•	•	•	•
•	•	•	•
일반직 계	<u>1,433</u>	<u>1,434</u>	+1
•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u>9</u>	<u>10</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205-2367